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재 외 동 포 의 출 입 국 과 법 적 지 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 학령기 자녀의 미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정규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거소 신고 사항에 “외국국적동포 자녀의 초·중·고등학교재학 여부”를 추가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제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 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 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생 략)	류)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u> 3. (현행 제2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16